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미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88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김미애·강선영·이달희

박상웅 · 김예지 · 김민전

성일종 • 최수진 • 최형두

김 건 • 유용원 • 김재섭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지방의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이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

지역구국회의원은 통상적으로 각 정당의 당협위원장 혹은 지역위원 장을 맡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거나 공천 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. 이러한 지역구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볼 때 지방선거의 공천을 목적으로 다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불 건전한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지방의회의원,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, 자치구·시·군의 장,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등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

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후원금 기부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지방자치단 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.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- 1. 지방의회의워
- 2.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3. 자치구ㆍ시ㆍ군의 장
- 4. 자치구·시·군의 장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
-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3의2.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13조의2(후원금 기부의 제한)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겹치는 구역을 선거구로 하는 지역구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.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. 1. 지방의회의원 2. 지방의회의원 2.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
	3. 자치구・시・군의 장 4. 자치구・시・군의 장 선거의
	<u>후보자 및 예비후보자(후보자</u> <u>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</u> 한다)
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	전 17 제46조(각종 제한규정위반죄)

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------한다. -. 1. ~ 3. (생 략) 1. ~ 3. (* <신 설> 3의2. 제13

4. ~ 7. (생 략)

-.
1. ~ 3. (현행과 같음)
3의2.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후
원금을 기부한 사람
4. ~ 7. (현행과 같음)